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여 건설현장의 건실시공을 도모
- 나.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사감독·감리,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및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나.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 마련 및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년 1회 이상의 의무 교육 실시 등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다.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함(안 제6조)
- 라.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방법과 이에 따른 발주청의 부실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방법을 정함(안 제7부터 제9조까지)
- 마. 부실시공으로 일정 이상 적발된 공사관계자의 교체 및 해당업체의 계약해지 규정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및 입찰에 따른 불이익 규정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바. 부실시공 신고에 대한 부실시공 판정, 부실등급 및 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 등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위원회에 의뢰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공사, 지급액의 최고한도 및 지급방법을 정하고 공사 관련자 및 부정 신고사항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tico3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건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청"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공립유치원, 「초·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5. "불법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의무화) 교육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행위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신고센터에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1호 또는 별지2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부실측정) ① 신고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하며, 교육감은 「건

설기술관리법」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발주청에 주요 부실내용, 부실별 점 부과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부실별점 부과) ① 교육감은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실별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실별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별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별점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 ①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별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별점 부과 및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라 부실별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때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시공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부실시공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하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부실시공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결정

3. 부실등급 및 불법하도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는 건설기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건설관련외부전문위원 3명 이상을 포함 한다.

제13조(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불법하도급에 대한 포상금은 개별처분에 대한 과징금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최고 1,000만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2,000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교육감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준공 완료 후 1년이 지난 건설공사의 경우

2. 공무원, 감리원,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부실 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업명		현장 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불법하도급 신고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20 년 월 일
불법하도급 유형	(1) ☐ (2) ☐ (3) ☐ (4) ☐ (5) ☐ (6) ☐ (7) ☐ (8) ☐ (뒷페이지 참조)		
신 고 자 (성 명)		신 고 자 (연 락 처)	
신 고 내 용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 구비서류 : 불법하도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공 사 명			
현 장 위 치			
원 도 급 업 체	업체명(대표자)		
	현장대리인(연락처)		
불 법 하 도 급 을 한 업 체	업체명(대표자)		
	현장대리인(연락처)		
불 법 하 급 을 받 은 업 체	업체명(대표자)		
	현장대리인(연락처)		
발 주 기 관 명			
발주기관별 공사유형	☐ 본청 ☐ 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 기타		
기 타 사 항			

※ 불법하도급 유형

- (1) 동일업종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 (2)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 (3) 의무하도급 위반
- (4) 일괄하도급
- (5)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
- (6)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 (7)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 (8) 기타

[별표1]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부실시공의 등급의 정도	포상금 지급 한도액
1 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500만원 이내
2 등급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내
3 등급	주요 구조부는 아니나 부실로 인하여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
4 등급	주요 구조부는 아니나 부실로 인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이내
그 밖의 등급	신고내용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공사품질 향상 또는 부실시공예방에 도움이 되는 경우	감사장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 제2조제1호(정의) ○ 제21조4(건설공사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8장(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별점(불실別點)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별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부실별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별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별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2008.1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에 따른다.

-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2010.2.4>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 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삭제 <2007.5.1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20호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⑪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7.26]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VIII장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1-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6)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부실벌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20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다.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라.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바.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설계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한정한다)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자.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용역)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평균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한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부실벌점의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하여야 한다.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실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자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실벌점은 승계된다.

5. 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부실별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들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별점 측정기준

번 호	주 요 부 실 내 용	별 점
1.1	○토공사의 부실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기 초굴착과 절토·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 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기초굴착 및 절토·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 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1.2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 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 지 않은 경우	3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 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1 또는 2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 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1
1.3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주요 구조부(제7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별표 10에서 같다) 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3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불구 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 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 ·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1
1.4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상태의 불량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3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

1.5	○배수상태의 불량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3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1
1.6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또는 2
1.8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또는 3
	-감리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1.9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1
1.10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1
1.12	○가설시설물(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동바리·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1.1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	1 또는 2

	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1.1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5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시험실·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3 2 1
1.16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건설기계·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2 1
1.17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8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19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2 또는 3

1.20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또는 2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1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1.21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계측관리의 불량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3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된 계측한 경우	2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1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 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2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기타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2.3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4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	3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2.5	○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 소홀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소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 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불철저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지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2 1
2.8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레미콘·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1
2.9	○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3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10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1	○감리업무의 소홀 등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2 또는 3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감리원만 해당한다)	1 또는 2
2.1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또는 3
	-같은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또는 2
2.13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또는 2
2.14	○ 지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2.15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또는 3
2.16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하여 기술지도 등	2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2.17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3
	-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1 또는 2

다.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 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3.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2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3.2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1
3.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1
3.4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3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1
3.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3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2
		1
3.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1
3.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3
3.8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또는 2
3.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설계 등 용역 업체만 해당한다)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또는 3
	-같은 분야의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또는 2

3.10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등(설계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영 제73조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설계감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의 참여기술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1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설계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3.12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건설안전점검기관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또는 2
3.13	○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2 1